

[검토보고서]

2018. 12. 3.(월) 제300회 정례회

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양주시장(환경관리과장)

나. 제출일 : 2018년 11월 26일

2.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양주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며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양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명시(안 제1조)
- 나. 정의 명시(안 제2조)
-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명시(안 제4조)
- 라.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대한 관련 조문 규정 (안 제5조~제15조)
- 마.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조문 규정(안 제16조)
- 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조문 규정(안 제17조~제18조)
- 사.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에게 고지 등에 대한 조문 규정(안 제19조)
- 아. 화학물질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기관·단체에 화학물질 관련 교육 시 예산 지원에 대한 조문 규정(안 제20조~제21조)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화학물질관리법」

나. 입법예고 : 2018. 10. 19. ~ 2018. 11. 7.(20일간)

다. 부서협의:

1) 협의기간 : 2018. 10. 8. ~ 2018. 10. 15.(5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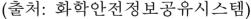
2)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요

- 본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며
- 양주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며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양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나. 화학사고 현황





다. 2018년 경기도 내 화학사고 현황

(2018년 6월 기준)

구분	사고일자	업종	사고지역	발생형태	사고원인	사고물질
1	2018.6.22.	제조업	안산시	저장탱크 누출	시설관리미흡 제어장치오작동	염화수소
2	2018.6.15.	기타	부천시	드럼용기 누출	시설관리미흡 기타용기전도	에틸렌디아민
3	2018.5.23.	기타	광주시	작업공정 누출	시설관리미흡 제어장치오작동	암모니아
4	2018.5.14.	제조업	포천시	저장탱크 누출	작업자부주의 제조부실	N-뷰틸 아크릴레이트
5	2018.5.14.	기타	화성시	차량사고로 인한 누출	운송차량사고 운전자부주의	수용성페인트
6	2018.4. 1.	사용업	시흥시	저장탱크 누출	시설관리미흡 과잉반응	황산
7	2018.3.19.	제조업	안성시	작업공정 누출	작업자부주의 관리부실	암모니아

라. 조례의 구성

○ 조례안은 총 2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화학사고 비상 대응계획 등을 규정하였음

구분	내용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조례제정 목적을 명시함
제2조	정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제5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
제6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촉직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를 명시함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함	
제9조	위원회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둠	
제12조	의견청취 등	안건심의 등에 관련된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제13조	회의록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제14조	비밀준수의무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제15조	수당 등	위원 등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	
제16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여야 함	
제17조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야 함	
제18조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9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하여 규정함	
제20조	교육·훈련 등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21조	재정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음	
제22조	시행규칙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마. 주요내용

1) 목적(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 운영
-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7조의2

2)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 한 것을 말한다.

-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 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안 제4조)

-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화학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시행 및 사업장 배출저감 지원방안
 -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양주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 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은 5년마다 양주시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에는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5)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제5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변경
 - 2.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 변경
 -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 ·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O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 여 규정하였음

6)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15조)

-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경찰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 나. 소방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 다.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라.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 바.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 사.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임,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의 지명, 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7)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안 제16조)

- 제1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양주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수 있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 O 양주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함

O 양주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2017년 12월 기준, 개소)

소계	제조	판매	보관저장업	사용업	운반업	비고
110	9	68	2	30	1	

O 위해관리계획서 지역 주민고지 개요

- 주민고지 내용
 - · 사업장 정보 : 상호, 위치, 대표전화
 - ·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 유해성, 사고위험성 등
 - ·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 영향범위, 방제장비 보유현황, 경부 전달방법 행동요령, 비상연락기관 및 전화번호
- 주민고지 방법
 - · 서면통지, 개별설명,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
 - · 적합 후 3개월 이내/매년 1회 이상 고지
- 관련법률
- ·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8)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안 제17조)

제17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 · 훈련 방법 및 시기
-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 · 복구 계획
-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

9)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안 제18조)

- 제18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 3. 비상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4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 아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 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을 요청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음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 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 5. 화학사고 대비 교육 · 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 · 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 · 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 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9호에 따른 주민 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 1.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자
- 2. 그 밖에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6. 5. 29.>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현장조사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0)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안 제19조)

5. 29., 2017. 11. 28.>

제1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수 있다.

-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O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에게 고지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11) 교육·훈련 등(안 제20조)

- 제20조(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 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2) 재정지원(안 제21조)

- 제21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13) 시행규칙(안 제22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바.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하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양주시 관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110개소로 화학물질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 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필요 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15년 1월에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관리업무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어 우리시가 화학물질 취급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

[화학물질 관리 관련 경기도내 시군별 조례 운영현황]

연번	시군명	법령명	시행일자
1	경기도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2018.10.01.
2	경기도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시행규칙	2015.05.07.
3	김포시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8.02.09.
4	동두천시	동두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2017.11.22.
5	성남시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7.08.14.
6	수원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2018.02.12.
7	안산시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8.04.20.
8	연천군	연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8.01.26.
9	의정부시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8.10.01.
10	파주시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7.09.22.
11	평택시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6.10.19.

[양주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현황]

연번	업종	업체명	주소
1	판매업	HICNS	광적면 화합로430번길 172-75
2	판매업	가나화학상사	광적면 삼일로 4
3	판매업	강남상사	남면 휴암로284번길 358-46
4	판매업	거성유화	남면 삼일로955번길 32
5	판매업	광명페인트	독바위로 30-1 (덕정동)
6	판매업	국보화학	남면 삼일로 485번길 132
7	판매업	국제산업	광적면 광적로 201-35
8	판매업	청록테크	은현면 화합로954번길 51-127
9	판매업	금강상사	광적면 부흥로 872
10	판매업	금산페인트	평화로 1464 (덕계동)
11	판매업	금하환경	화합로 1731-10 (회암동)
12	판매업	(주)다나케미칼	광적면 부흥로230번길 76-108
13	보관저장업	(주)다나케미칼	광적면 부흥로230번길 76-108
14	판매업	다인건설	부흥로 1815 (광사동)
15	사용업	대광페인트	칠봉산로 240-43 (봉양동)
16	제조업	대광페인트	칠봉산로 240-43 (봉양동)
17	사용업	(주)대륜발전	화합로1710번길 125 (옥정동)
18	사용업	대명텍스타일㈜	은현면 화합로 1100
19	판매업	대성산기㈜	은현면 은남로 226-106
20	판매업	대성특수유화	삼숭로129번길 55-7 (삼숭동)
21	사용업	주식회사 대양물산	광적면 화합로147번길 33
22	판매업	대영페인트	백석읍 부흥로 1004
23	판매업	대원케미칼㈜	광적면 화합로430번길 172-79
24	판매업	대한도장공사	평화로 2008 (봉양동)
25	판매업	대흥철물건재	광적면 광적로 199
26	판매업	대흥화공	남면 검준2길 9
27	사용업	㈜동광합성	은현면 은남로203번길 96-17
28	제조업	동규화학공업㈜	남면 삼일로485번길 132
29	사용업	동보섬유	은현면 은현로 459-28
30	사용업	동아상사	남면 현석로785번길 290-13
31	사용업	득금물산	은현면 운하로 199
32	판매업	미래연수	화합로 1289-40 (덕정동)
33	제조업	미아물산㈜	광적면 그루고개로 22
34	판매업	미화케미칼	화합로 1731-10 (회암동)
35	사용업	부림케미칼	남면 휴암로284번길 403-111

36	사용업	부림케미칼	남면 휴암로284번길 403-111
37	제조업	부성케미칼	은현면 은현로55번길 190-14
38	판매업	북부	백석읍 부흥로1204번길 70-13
39	판매업	비코켐	광적면 화합로430번길 172-79
40	사용업	삼성통상(휴업중)	남면 휴암로392번길 335
41	사용업	삼승텍스타일㈜	은현면 은현로517번길 17-18
42	판매업	삼양화학	은현면 검준2길 406-14
43	판매업	상수상사	남면 화합로610번길 46
44	판매업	서강화학	남면 화합로430번길 109
45	제조업	서안켐텍㈜	남면 현석로 833
46	판매업	서안켐텍㈜	남면 현석로 833
47	보관저장업	서안켐텍㈜	남면 현석로 833
48	사용업	(주)서울벽지	칠봉산로286번길 77 (봉양동)
49	사용업	서울우유협동조합 양주공장	고덕로139번길 360 (덕계동)
50	판매업	서울정수	은현면 그루고개로 604
51	판매업	성우방수방염	평화로 1787 (회정동)
52	사용업	성창화성㈜	남면 개나리21길 18
53	사용업	세계섬유㈜	남면 현석로785번길 322
54	판매업	주식회사 세원씨앤텍	남면휴암로284번길358-45
55	판매업	세진코퍼레이션	화합로 1637-11 (회암동)
56	판매업	신양산업	광적면 현석로495번길 64-33
57	사용업	애니테크	남면 운하로 66-14
58	사용업	양주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남면 검준길 184
59	판매업	양주고려페인트	부흥로 2038-14 (만송동)
60	판매업	㈜에이치케이씨	은현면 운하로 127-4
61	판매업	엠코	은현면 운하로528번길 239-52
62	사용업	(주)영신물산	남면 현석로785번길 207
63	판매업	영진케미칼	광적면 부흥로573번길 18
64	판매업	용운페인트	광적면 부흥로 933
65	판매업	우석상사	청담로 163-26 (고암동)
66	판매업	우신상사	광적면 삼일로 5
67	판매업	우진케미칼	은현면 화합로954번길 51-127
68	사용업	유일섬유	광적면 부흥로 881-30
69	판매업	<u> </u>	광적면 부흥로 862 광적공구상가 1동 8호
70	판매업	(주)이에스씨	광적면 그루고개로 221번길 144-23

71	판매업	(주)제우씨엠지	남면 화합로430번길 166
72	판매업	㈜제이에스이엠씨	남면 삼일로639번길 34
73	판매업	주식회사 주은실업	은현면 은남로203번길 65
74	판매업	진명화학	은현면 그루고개로426번길 60-102
75	사용업	진웅산업	광적면 부흥로882번길 35
76	사용업	(주)창진	남면 검준길 120
77	판매업	창화켐	백석읍 고릉말로 50
78	사용업	천일페인트㈜	화합로 1325번길 333 (덕정동)
79	제조업	천일페인트㈜	화합로 1325번길 333 (덕정동)
80	판매업	청록E&C	화합로 1731-10 (회암동)
81	판매업	(주)청운	광적면 화합로 317-13
82	사용업	청정계	평화로 1600 (회정동)
83	사용업	청호	은현면 은현로 230
84	사용업	케이에스폴리텍	남면 삼일로 839-42
85	사용업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은현면 강변서로 303
86	판매업	태한케미칼	광적면 화합로 317-13
87	판매업	하나화학	남면 휴암로284번길 358-46
88	판매업	하니케미칼	백석읍 중앙로 285
89	제조업	한국유화㈜	고덕로139번길 222 (덕계동)
90	판매업	한성화공방수상사	광적면 부흥로 883
91	판매업	한양알엘씨	은현면 운하로 183-11
92	판매업	한중화공	화합로 1250 (회정동)
93	운반업	현대상운㈜	광적면 현석로413번길 68-24
94	판매업	현대상운㈜	광적면 현석로413번길 68-24
95	판매업	현진상사	은현면 봉암길 58
96	사용업	(주)협성그룹	남면 현석로 817-16
97	사용업	흥산화성	백석읍 권율로1253번길 77-10
98	제조업	㈜모노켐	백석읍 권율로1203번길 70-33
99	판매업	㈜모노켐	백석읍 권율로1203번길 70-33
100	판매업	(주)삼진유화	남면 삼일로 687
101	판매업	두울CE	칠봉산로228번길 126-258, 2층
102	판매업	더죤환경기술㈜	덕정12길 38, 104호(덕정동)
103	판매업	청명이앤티	천보산로 132 (회암동)
104	판매업	주식회사 디케이팩토리	광적면 화합로81번길 79
105	사용업	옥정하수처리장	평화로 1920 (회정동)
106	판매업	유신실업	장흥면 권율로 10
107	판매업	㈜청수이엔텍	남면 개나리16길 8
108	판매업	주식회사 에이치케이비	광적면 화합로 317-13
109	판매업	바이런플랜트	청담로116번길 225
110	제조업	부림케미칼㈜	남면 휴암로284번길 403-111